

문서번호	주민생활지원과-5910	주무관	희망복지지원1팀장	주민생활지원과장	주민생활국장		
결재일자	2016.2.24.	조정임	이만희	심원택	02/24 강대형		
공개여부	부분공개(6)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
강북구 동(洞)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정비계획

2016.2.24.

강 북 구
(주민생활지원과)

강북구 동(洞)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정비 계획

동(洞)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변동사항을 정비(위·해촉)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연속성을 기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1 운영 개요

관련법규
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(2015.7.1.시행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5조

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

-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
-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업무
-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
-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

- 동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

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: 위촉일로부터 2년(연임 가능)

※중도 위촉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함(~2016.4.30까지)

2 위촉장 수여

위촉일자: 2016. 2.

위촉대상: 89명(당연직 66명, 위촉직 23명)

※ 위촉장은 민간위원에게만 수여(30명)

※ 당연직, 위촉직간 단순 변경되는 민간위원은 위촉장 수여 제외(4명)

- 수여방법: 각동 위원장(동장)이 전달
- 위촉장(안): 별첨

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

-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

연번	동명	위원수(명)			해촉	위촉	비고
		계	당연직	위촉직			
강북구		288	116	172	102	89	
1	삼양동	24	11	13	5	7	
2	미아동	29	8	21	4	4	
3	송중동	18	9	9	7	4	
4	송천동	30	10	20	6	7	
5	삼각산동	21	8	13	8	8	
6	번1동	20	10	10	8	7	
7	번2동	17	8	9	15	11	
8	번3동	22	12	10	8	8	
9	수유1동	18	8	10	14	7	
10	수유2동	18	8	10	8	6	
11	수유3동	22	8	14	7	8	
12	우이동	27	8	19	7	8	
13	인수동	22	8	14	5	4	

- 위·해촉 현황

구분	해촉			위촉		
	계	당연직	위촉직	계	당연직	위촉직
강북구	102	60	42	89	66	23

- 붙임 1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수여 대상자 명단 1부.
2. 위촉장(안) 1부.
3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자 명단(당연직포함) 1부.
4.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1부. 끝.